

예 산 총 칙

2020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65,063,392	16,951,902
일반회계	540,980,101	16,229,403
특별회계	24,083,291	722,499
기타특별회계	24,083,291	722,499
상수도사업	3,253,619	97,609
하수도사업	3,858,221	115,747
수질개선	7,746,956	232,409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569,900	17,097
의료급여기금	659,923	19,798
소득특화사업	6,000,000	180,000
농공단지조성사업	1,276,658	38,300
공영개발사업	596,714	17,901
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	121,300	3,639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,101,213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5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재해대책 및 복구비